

적용요령

- '26. 1. 1.부터 시행(부칙§1)
 - 이 법 시행 전에 감면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90조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(부칙§12)
 - 제90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(부칙§12)

2 개정조문

<지방세특례제한법>